

	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정	규정번호	3-8-26
		제정일자	1994.03.01.
		개정일자	2025.06.01.
		개정차수	5차
		소관부서	입학홍보협력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입생 입학에 관하여 엄정을 기하고 우수한 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입시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 개발
3. 입학 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전형유형, 전형자료, 자격기준, 사정방법, 모집형태, 전형 일정, 모집인원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입학전형관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5.06.01.>
6. 삭제 <2025.06.01.>
7. 삭제 <2025.06.01.>
8. 삭제 <2025.06.01.>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홍보협력처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입학홍보협력처장, 교무처장, 전략 기획처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삭제 <2025.06.01.>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06.01.>

제7조(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주무 부서에서 담당한다.

제8조(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회의 내용 중 위원장이 지정한 기밀을 유지할 부분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엄수하여야 한다.

제9조(서기) 위원회는 위원 중 1인을 서기로 둔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